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513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등	3

I. 개요

1. 김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51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윤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1. 13.

(3) 회 부 일 : 2024. 11.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추진으로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 전송을 위한 플랫폼 업체가 등장하였음. 이 중 한 업체가 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여 그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켜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더해 이러한 플랫폼상의 우선노출 혜택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해당 도매상에서 구매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하여 재주문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영업도 하고 있음.

현행법은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플랫폼 업체와 해당 업체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의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중개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약국개설자가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중개업자등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중개업자등이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여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46조 및 제47조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 환자와 약국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 정보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약국중개플랫폼”으로, 해당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람을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로 규정하고(안 제24조의2제1항제1호다목 신설),
- 약국개설자가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안 제24조의2제1항제1호·제3호 신설 등),
- 한약업사와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를 추가하고(안 제46조제5호 신설),
-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약국에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와 약국중개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국’을 포함하며(안 제47조제7항제3호 신설),
-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가 환자에게 사은품·의약품 가격 할인 등

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국의 의약품 가격·조제 가능 여부·배달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7조제11항 신설 및 제95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① 약국개설자(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및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약속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24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① 약국개설자(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및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약속하는 행위 가. 의료인 나. 「의료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종사자 다. 환자와 약국에 관련된 자료 및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한약 업사 또는 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 니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 ⑥ (생 략) ⑦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 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약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u>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형태로 기록하고 처리 하는 시스템(이하 “약국중개플 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 하는 사람(이하 “약국중개플렛 폼사업자”라 한다)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u> 2. <u>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 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 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 는 행위</u> 3. <u>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가 경 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u>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u>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	--

1. · 2. (생략) <신설> ⑧ ~ ⑩ (생략) <신설> 제9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의3. (생략) 8. 제47조제1항(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하며, 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항·제7항 또는 제85조제9항을 위반한 자 8의2. ~ 12. (생략) ② · ③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와 약국중개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국 ⑧ ~ ⑩ (현행과 같음) ⑪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자에게 사은품·의약품 가격 할인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2. 환자에게 약국의 의약품 가격·조제 가능 여부·배달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제95조(벌칙) ① ----- ----- -----. 1. ~ 7의3. (현행과 같음) 8. 제47조제1항(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하며, 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항·제7항·제11항----- ----- 8의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 전송을 위한 플랫폼 업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일부 플랫폼 업체에서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여 해당 업체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우선 노출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의약품을 재구매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현행법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의약품 도매상 포함¹⁾)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이들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²⁾,

해당 조항은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하는 것으로, 의약품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를 모두 처벌하여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1) 「약사법」

제46조의2(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①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하 “의약품공급자”라 한다)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위탁된 판매촉진 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도 포함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업체는 플랫폼상의 노출 빈도 등을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일부 약국에 대해 의약품 채택이나 거래 유지 등의 판매촉진을 유도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모호한 점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약국중개플랫폼과 그 사업자를 정의하고, 약국개설자가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며,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제한하고,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가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에 대한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24조의2제1항제1호다목) 개정안은 “약국중개플랫폼”을 환자와 약국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해당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람을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로 정의함.

□ 그런데 개정안의 정의는 “중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바 환자와 약국에 관련된 자료·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이라면 모두 약국중개플랫폼에 해당하게 되는데, 환자의 진료이력 등을 단순 기록·확인하는 시스템이나 약국에서 업무처리를 위해 활용하는 전자시스템 등도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되므로,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24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에게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1호다목),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가 경제적 이득등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제3호).

□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에게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및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경우 “약국개설자”는 현행법 제94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³⁾,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거나 약속받은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벌칙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제24조의2제1항제1호다목은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문맥상 약국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이해되나 현행법에서 별도로 업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⁴⁾,

3) 「약사법」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2의2. 제24조의2를 위반한 자

4) 유사 입법례에서는 업종에 대한 설명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② 음반등의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② 애니메이션업자 및 애니메이션의 제작·유통 또는 이용을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같은 항 제3호는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가 경제적 이득등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주체와 객체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바, 현행법상 유사한 표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⁵⁾.

- 예컨대, 현행법 제24조의2제1항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득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 개정안은 “약국중개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람”을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⁶⁾」에 따르면 “사람”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개념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정의상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는 법인이 될 수 없음.

□ (안 제46조제5호) 개정안은 한약업사와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를 추가하여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46조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의 결격사유는 i) 약사·한약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정신질환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 등), ii) 허가

5) 「약사법」

제24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① 약국개설자는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약속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 법령에서는 ‘자’가 ‘자연인’이나 ‘법인’의 법인격을 가진 명칭으로 쓰인다.
- ‘자’나 ‘사람’ 모두 ‘자연인’인 ‘사람’을 나타낼 때 쓸 수 있지만 ‘자’가 ‘사람’만을 의미할 때에는 ‘사람’으로 고쳐 쓴다.
- ‘자’가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으로 바꾸지 않고 ‘자’를 그대로 쓴다.

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ii)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 iv)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됨⁷⁾.

□ 현행법상 의약품공급자(의약품 도매상 포함)가 의약품의 소매행위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분리하여 의약품의 유통 체계와 판매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인바⁸⁾,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의 결격사유에 포함된 것은 처방권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조제권이 있는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의 공급 및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으로 이해됨.

□ 그런데,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는 환자와 약국에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의약품의 공급·유통 등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음에도, 모든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예외 없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소

7) 「약사법」

제46조(한약약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한약약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7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개설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 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이 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료법」·「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4의2.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약품공급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의약품의 소매

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⁹⁾, 규제의 필요성과 헌법상 자유 간의 비교형량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안 제47조제7항제3호)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약국에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와 약국중개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국’을 포함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취지는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약국이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 의약품 도매상이 해당 약국에 직간접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현행법 제47조제7항은 의약품 도매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호와 제2호에서 각 목을 통해 “특수한 관계”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¹⁰⁾,

9)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0)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⑦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약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약품 도매상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가. 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다.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해당 법인의 총출연금액·총 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자 및 해당 법인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라. 다목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마. 다목 및 라목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바.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사. 이 호의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아. 의약품 도매상 및 이 호의 특수관계인의 사용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사원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의약품 도매상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가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제3호는 “특수한 관계”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사실상 지배”의 의미가 약국중개플랫폼 사업자와 의약품도매상 간의 배우자, 가족, 지분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조항을 보완 검토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안 제47조제11항·제95조제1항제8호) 개정안은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가 환자에게 사은품·의약품 가격 할인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와 환자에게 약국의 의약품 가격·조제 가능 여부·배달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개정안은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가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약품 가격 및 조제·배달 가능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일부 약국에 유리하도록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약국 간 공정거래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

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라. 다목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마. 다목 및 라목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바. 법인인 의료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사. 이 호의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아.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개설자 또는 이 호의 특수관계인의 사용인

방을 차별하여 취급하거나,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강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여 지원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가 제1항제9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¹¹⁾, 해당 조항은 사업자에 해당하는 약국중개플랫폼 사업자와 약국개설자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임.

□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이 되거나 과징금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는바¹²⁾, 해당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9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45조제2항 및 제47조의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말한다)에게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하여 현행법에 별도의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을 위해 약국의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를 현행 의료인 외에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까지 확대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처방전 또는 환자에 미치는 의료인과 중개업자등의 영향력 차이가 존재하고, 약국이 중개업자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이 사인 간 거래인지 또는 처방전·환자 유인 목적인지 구분이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중개업자등의 도매상 허가 금지, 중개업자등과의 특수관계 도매상과 제휴 약국간 도매상 거래 금지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중개업자등의 도매상 허가 등으로 인한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은 현행 공정거래법 또는 약사법상 관련 법령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제5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4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 (법무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여 의약품의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안 제47조 제7항제3호의 “사실상 지배”의 의미가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와 의약품도매상 간의 배우자, 가족, 지분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시행령에 위임규정을 두는 등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대한약사회)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응급 및 필수진료와 무관하고 의료와 약물 남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해당 업체의 수익 구조 등을 살펴보면 처방내역을 이미지로 전송하여 처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온라인 오픈마켓에 불과하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바, 강력한 제재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에 찬성함.
- (대한의사협회) 약국 간의 공정거래 질서를 유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다만, 중개업체(플랫폼 업체)의 무분별한 팽창이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환자 유인행위 및 의약품·의료서비스 오남용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령이 우선 제정되어야 함.

문 의 처

02)6788-5504